경기도

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1 주택(부속토지, 주택분양권 포함): 「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」 별표1

| 거래내용 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매매·교환 | 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 6 | 25만원 |
| |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80만원 |
| |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- |
| |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_ |
| 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1천분의 6 | - |
| | 15억원 이상 | 1천분의 7 | - |
| 임대차 등 | 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 5 | 20만원 |
| |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30만원 |
| |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1천분의 3 | - |
| | 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- |
| 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_ |
| | 15억원 이상 | 1천분의 6 | <u>-</u> |

2 오피스텔: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, 별표2

| 적용대상 | 거래내용 | 상한요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전용면적 85㎡ 이하 | 매매·교환 | 1천분의 5 |
| (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) | 임대차 등 | 1천분의 4 |

3 **토지,상가등**: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

| 거래내용 | 상한요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등 | 1천분의 9 |

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

- (1)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(단, 한도액 초과 불가)
 - ▶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, 제4항
- (2)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제27조의2
- (3)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: 보증금+(월차임×100)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5항 ※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: 보증금+(월차임×70)
- (5) 분양권 거래금액: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포함)+프리미엄
- (6)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





